



교육감 규정

번호: A-411

제목: 행동 위기 완화/중재 및 911 연락

항목: 학생

발행: 2015 년 5 월 21 일

요약

이것은 신규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중재 및 완화, 911 연락에 관한 뉴욕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I. 행동 위기 완화/중재 및 911 연락¹

A. 본 규정은 행동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에 대한 중재 및 완화, 911 연락에 관한 뉴욕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휘 됩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한 행동에 가담할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행동을 규제할 만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의 상황을 교직원이 다음과 같이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학교장/대리인에게 반드시 문제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해야만 합니다.² 학부모는 안전이 허락하고 교직원의 행동 완화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전화로, 또는 직접 자신의 자녀와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¹신체 부상 또는 의료상황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여 911에 연락하는 규정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12에 나와 있습니다.

²"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독립한 미성년자이거나 18세 이상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2. 상황에 대처하는 교직원들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 행동을 안전하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행동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 및 중재 2)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아래 섹션 III 참고)에 명시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 활용. 위기에 대응하는 교사나 교직원이 문제 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교사/교직원은 위기 완화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른 교직원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사/교직원은 교감, 주임, 학교의 위기 중재 팀의 일원, 빌딩 대응 팀,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내 정신 건강 클리닉(SBMH)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내 보건 센터(SBHC-학교에 있는 경우), 또는 이동 아동 위기 대응 팀(보로에서 제공하는 경우) 등 기타 적절한 직원이나 서비스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만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그 상황이 교직원이나 위에 설명한 기타 지원 서비스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911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현장의 교직원/학교안전 요원이 911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II. 911에 연락이 취해졌을 때 학교의 의무

- A. 학생때문에 911에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911에 전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B.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면 현장에 출동한 911 응급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드시 현장의 911 대원들 및 자녀(학생)와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C. 만약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연락이 된 상태라면, 현장의 911 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부모에게 반드시 현장의 911 대원들 및 자녀(학생)와 전화로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D. 만약 학부모가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부모의 요청이 뉴욕시 소방청(FDNY)의 의료 지원 거절(Refusal of Medical Assistance)에 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락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E. 만약 학생에게 응급 처치 및/또는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는 적절한 다음 절차(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낼 것인지 등)를 의논해야 합니다.
- F.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직원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생이 응급 의료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직원이 반드시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G. 어떤 경우여라도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조치로서 911 에 신고전화를 하거나 출동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기 I.A.2 의 조치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911 을 이러한 완화 전략 대안 조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H.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I. (학생의) 행동 위기가 발생하면 교직원은 학부모(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학생)와 만나 학생을 위한 적절한 긍정 행동 지원 및 중재를 논의해야 합니다.

III. 위기 중재 계획

- A. 각 학교의 위기 대응/예방교육/중재 팀(위기 중재 팀)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 계획의 일환으로서 위기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행동 위기 상황 완화 전략
 2. 위기에 처한 학생이 남들과 안전하게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교내의 장소 지정
 3. 완화 전략을 훈련 받은 교직원 지정
 4. 학교 및 학부모에게 제공 가능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 파악(예, 정신건강 클리닉, 이동 위기 팀, 응급/당일 정신건강 평가 제공 가능한 시설 등)
 5. 위기 완화 및 대응 프로토콜이 교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설명.

IV. 신고 절차

- A. 학교장/대리인은 911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응급 접수 센터(EIC)에 전화 (718) 935-3210 번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B.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학교 관련 사건(911 신고가 이뤄진 사건 포함)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24 시간 이내에 온라인 사건발생 리포트(OORS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 C.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OSYD)에서는 OORS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헬프 데스크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8:00 AM-5:00 PM 입니다. 헬프 데스크에 연락하려면 (718) 935-5004 번으로 전화하여 OSYD Web Support 로 연결을 부탁하면 됩니다.
- D.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820 및 가정 교육 권리 및 비밀보호법(FERPA)에 의거하여 자녀의 사건발생 리포트 사본을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V. 공고

- A. 각 학교의 위기 중재 팀은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 이전에 전 교직원 및 비교직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반드시 본 규정 및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져야 합니다.
- B.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까지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졌음을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 계획에 인증해야 합니다.
- C. 본 규정 및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들은 10 월 31 일까지 교내 상주 학교 안전요원 레벨 III/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한 학교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 D. 본 규정의 사본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VI. 문의

본 규정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5501

Fax: 212-374-5751